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02. 28(월)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 나. 회부일자 : 2005. 3. 22(화)
- 다. 상정일자 : 2005. 3. 23(수)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3.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가. 제안이유

-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평창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를 통폐합하여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안 제4조)
 - 군수는 법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강원도 묘지 등 수급 계획에 맞추어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인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지정 (안 제5조)

- 개인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200m,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안 제6조)

-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 제2항 제9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최근 5년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 기타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설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안 제8조)

○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은 기존의 평창군공설묘지관리 및 사용조례안 내용과 동일하고, 단 사용기간은 동조례 제7조 분묘의 설치기간을 신설하며, 또한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을 신설한다.(안 제28조)

○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위임사무명) 일련번호 28 다음에 "29"로, 사무명은 "읍면(마을)공동묘지 사용허가"로, 근거법령은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8조"로 한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래영)

가.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1. 1. 13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수에게 부여된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납골의 적극적인 장려 등 올바른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장사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근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되는 조례 등을 토대로 현행 평창군 공설묘지사용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설묘지 관리규정 등을 포함하여 개인묘지, 납골시설 등 장사시설 전반에 대한 사항을 꼭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 중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업무범위를 정해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 안 제4조에서는 묘지 등의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 등의 수급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분석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묘지 등 장사시설이 붕괴·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7조에서는 분묘의 설치 및 연장기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등을 위한 민간자본의 유치 규정을 두고
- 안 제9조 내지 제26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공설묘지)의 사용자의 범위, 묘지의 면적, 분묘의 구조, 사용허가, 사용권의 소멸,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자의 신고의무, 위탁운영, 관리사무소 설치, 장사시설관리운영위원회, 묘적부 등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문구성이나 조문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조례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평창군 공설묘지사용 및 관리조례의 내용을 근거로 대부분 마련되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관련하여서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라.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끝.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5년 3월 23일
제 안 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사유

- 안 제5조 제2항은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미터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이상 떨어진 곳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묘지증가 억제를 위해 화장·납골을 장려하는 국가시책과 배치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하여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제 거리를 완화하여 올바른 장묘문화시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5조 제2항중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미터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도로·철도·하천 및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한다.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2항중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미터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도로·철도·하천 및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p>제5조(개인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장소)</p> <p>① 생략</p> <p>② 영 제7조의2 별표1 및 제13조 별표3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중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u>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미터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이상 떨어진 곳</u>을 말한다.</p> <p>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생략</p>	<p>제5조(개인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장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도로·철도·하천 및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미터이상 떨어진 곳 -----.</p> <p>-----</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